

〈 제209회 이사회 의사록 〉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09회	2021.1.28.	이충규 추연길 김종경 허남식 차인용 박종환 배성한 김윤희 이정희 조규호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2021-01호○ 의 제: 2021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의안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및 안전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및 확립을 위한 2021년 부산시설공단 안전관리 기본계획 심의	원안의결	

〈 제210회 이사회 의사록 〉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0회	2021.3.30.	이충규 추연길 김종경 (代권순갑) 허남식 차인용 박종환 김윤희 박인호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02호 ○ 의 제: 2020사업연도 결산(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사업연도 사업 종료에 따른 공단 결산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03호 ○ 의 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볼선수단 후원금 및 우승 상금 등 세입반영 ▷ 한마음스포츠센터 통합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금 반영 ▷ 코로나 19에 따른 영락공원 매출 감소 반영 위한 세입·세출 조정 ▷ 필수 운영경비 및 긴급 현안사업 추진 위한 예산과목 조정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04호 ○ 의 제: 취업규칙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폐지 	원안의결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0회	2021.3.30.	이충규 추연길 김종경 (代권순갑) 허남식 차인용 박종환 김윤희 박인호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05호 ○ 의 제: 보수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당 지급요건 및 범위 명확화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폐지 	수정의결 (찬성7/ 반대3)	제25조 조문 수정 (별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06호 ○ 의 제: 여비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반영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 반영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07호 ○ 의 제: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문화된 복리후생 수당 정비 통한 사규 협행화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08호 ○ 의 제: 청원경찰운영 및 징계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폐지 	원안의결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0회	2021.3.30.	이충규 추연길 김종경 (代권순갑) 허남식 차인용 박종환 김윤희 박인호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09호 ○ 의 제: 연봉제시행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학비보조수당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10호 ○ 의 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의안내용: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별지]

제210회 이사회 수정의결 내용

의안번호	규정명	수정내용
제2021-05호	보수규정 개정(안)	· 제25조 조문 수정

※ 하단의 조문대비표 참조

조문 대비표

□ 제2021-05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 안	수 정
<p>제25조(기술수당 등) <u>관련법령</u> 의거 해 당 직무분야의 자격 또는 기술을 취 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기준 에 의한 기술수당 등을 지급한다.</p> <p>1. ~ 2. (생 략)</p>	<p>제25조(기술수당 등) <u>국가기술자격법</u> 및 <u>관련법령</u>에 의한 기술자격 및 면 허를 취득하고 해당(직무) 분야의 업 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자에 대 하여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기술 수당 등을 지급한다.</p> <p>1. ~ 2. (생 략)</p>

* 진한글씨체가 수정 의결된 부분

〈 제211회 이사회 의사록 〉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1회	2021.6.25.	이충규 추연길 허남식 (代남정은) 차인용 박종환 이정희 박인호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11호 ○ 의 제: 신규사업 인수사항 보고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위탁 부산광역시 방침에 따라 신규사업 인수 대상사업 개요 등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12호 ○ 의 제: 직제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신규 수탁에 따른 관리 조직 신설 ▷ 특별교통수단 업무량 증가 및 관리범위 확대에 따른 조직 개편 ▷ 신규사업 인수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등 	원안의결	

〈 제212회 이사회 의사록 〉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2회	2021.7.22.	이충규 추연길 김선조 임경모 차인용 박종환 배성한 김윤희 이정희 박인호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13호 ○ 의 제: 부산시설공단정관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조직개편(2021.7.7.부)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 변경사항 반영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14호 ○ 의 제: 직제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조직개편(2021.7.7.부)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 변경사항 반영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15호 ○ 의 제: 소송업무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대리인 선임의 편중 현상 방지를 위한 제한규정 신설 ▷ 市 소송사무 처리규칙 준용 통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현실화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16호 ○ 의 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결과에 따른 공단 세입·새출 반영 ▷ 2020 회계연도 결산 완료에 따른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편성 ▷ 필수 운영경비 및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과목조정 		

〈 제213회 이사회 의사록 〉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3회	2021.8.11.	이충규 추연길 김선조 임경모 차인용 박종환 배성한 김윤희 이정희 박인호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2021-17호○ 의 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안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공단측 위원(2명) 추천		원안의결

〈 제214회 이사회 의사록 〉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4회	2021.9.16.	이충규 추연길 김선조 임경모 차인용 박종환 배성한 김윤희 이정희 박인호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18호 ○ 의 제: 직제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규인수에 따른 정원 조정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19호 ○ 의 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교부, 기타영업외수익 발생 등 예산 반영 및 예산 과목 조정 	원안의결	

〈 제215회 이사회 의사록 〉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5회	2021.11.18.	이충규 박인호 김선조 (代남정은) 차인용 박종환 배성한 김윤희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20호 ○ 의 제: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심의수당 지급대상 확대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21호 ○ 의 제: 취업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지원 ▷ 군 입영 자녀휴가 확대 및 구호휴가 신설 	수정의결	별첨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22호 ○ 의 제: 취업규칙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지원 ▷ 업무직 기본급 조정 ▷ 군 입영 자녀휴가 확대 및 구호휴가 신설 	수정의결	별첨참조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5회	2021.11.18.	이충규 박인호 김선조 (代남정은) 차인용 박종환 배성한 김윤희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23호 ○ 의 제: 직제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7급 및 8급 정원 통합 관리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24호 ○ 의 제: 보수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기본급 조정 및 신규 임용직원 경력환산표 조정 	수정의결	별첨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25호 ○ 의 제: 물품관리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관리전환 범위 명확화 ▷ 비품관리카드 양식 현행화 ▷ 물품수급관리 실적보고서의 작성·제출·보고 시기 통일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26호 ○ 의 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사업 세입·세출 조정, 핸드볼선수단 후원금 편성,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편성 등 예산 반영 및 예산 과목 조정 	원안의결	

[별지]

제215회 이사회 수정의결 내용

의안번호	규정명	수정내용
제2021-21호	취업규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28조 제1항의 제8호, 제9호 조문 수정
제2021-22호	취업규칙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44조 제7항, 제8항 조문 수정
제2021-24호	보수규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14조 별표2, 별표3 원안의결제15조 별표4 '경력환산표' 보류

※ 조문대비표 참조

조문 대비표

□ 제2021-21호 취업규정 개정(안)

원 안	수 정
<p>제28조(특별 유급휴가) ① (생 략)</p> <p>1. ~ 7. (생 략)</p> <p>8. 군입영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과 <u>신병훈련수료식</u> 당일 1일의 <u>군입영자녀휴가</u>를 받을 수 있다.</p> <p>9. <u>풍해 · 수해 · 화재 등 재해</u>로 말미 암아 피해를 입은 직원과 <u>재해지역</u>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직원은 5일 이내의 <u>재해구호휴가</u>를 받을 수 있다.</p>	<p>제28조(특별 유급휴가) ① (원안과 같음)</p> <p>1. ~ 7. (원안과 같음)</p> <p>8. ----- -----<u>신병훈련수료식</u> 당일 1일의 <u>휴가</u>-----.</p> <p>9. <u>재난 · 재해</u>----- -----<u>재난 · 재해지역</u>-- ----- -----<u>구호휴가</u>-----.</p>

* 진한글씨체가 수정 의결된 부분

조문 대비표

□ 제2021-22호 취업규칙 개정(안)

원 안	수 정
<p>제44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p> <p>⑦ 군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과 <u>신병 수료식 당일 1일의</u> <u>군입영자녀휴가</u>를 받을 수 있다.</p> <p>⑧ <u>풍해 · 수해 · 화재 등 재해로</u> 말미 암아 피해를 입은 직원과 <u>재해지역</u>에 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직원은 5 일 이내의 <u>재해구호휴가</u>를 받을 수 있다.</p>	<p>제28조(특별휴가) ① ~ ⑥ (원안과 같음)</p> <p>⑦ ----- ----- <u>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u> <u>휴가</u>-----.</p> <p>⑧ <u>재난 · 재해</u>----- ----- <u>재난 · 재해지역</u>-- ----- ----- <u>구호휴가</u>-----.</p>

* 진한글씨체가 수정 의결된 부분

〈 제216회 이사회 의사록 〉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6회	2021.11.25.	이충규 박인호 차인용 박종환 배성한 김윤희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2021-27호○ 의 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재추천(안)○ 의안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추천위원회 공단측 위원(1명) 재추천	원안의결	

〈 제217회 이사회 의사록 〉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7회	2021.12.23.	이충규 박인호 차인용 박종환 배성한 김윤희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28호 ○ 의 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운영규정 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탁에 따른 관리·운영 규정 마련 	수정의결	별지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29호 ○ 의 제: 사규관리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운영규정 및 내규 제정에 따른 향후 홈페이지 사전예고 대상사규 추가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30호 ○ 의 제: 직제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유료도로 연속통행할인 통합시스템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직 정원 조정(↑1명) 	원안의결	

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제217회	2021.12.23.	이충규 박인호 차인용 박종환 배성한 김윤희 장대덕 조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31호 ○ 의 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공간과 화장실을 공용면적에서 공공면적으로 전환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32호 ○ 의 제: 보수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임용직원 경력환산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33호 ○ 의 제: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콜택시 운행보조금 부산시 제3회 추경예산 편성분 반영 ▷ 운영경비 부족분 퇴직급여충담금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 조정 ▷ 2020년도 직영사업 결산에 따른 잉여금 예산반영 등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021-34호 ○ 의 제: 2022년도 예산(안) ○ 의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별지]

제217회 이사회 수정의결 내용

의안번호	규정명	수정내용
제2021-28호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운영규정 제정(안)	· 제10조, 부칙 제2조, 별지 제2호 제14조 조문수정

※ 조문대비표 참조

조문 대비표

□ 제2021-28호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운영규정 제정(안)

원 안	수 정
<p>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공단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수탁한 후 최초의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용자(종전의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u>의하여</u> 결정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명의로 실제 영업을 하는 자에 한 한다.</p> <p>②(생 략)</p>	<p>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 ----- ----- ----- <u>따라</u> ----- ----- -----. ②(원안과 같음)</p>

* 진한글씨체가 수정 의결된 부분

<<원 안>>

[별지 제2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목적)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의 목적은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 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10%)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부산광역시장(공단 이사장)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한 날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7조(보험가입) 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이하 “사용허가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을 수령인으로 하여 공단에서 지정하는 손해보험(화재,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공단)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비용(제세공과금, 관리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부산광역시(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부산광역시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부산광역시(공단)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요청하려면 2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공단 관리인)의 참여하에 당해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공단에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공단에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공단)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부산광역시(공단)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부산광역시(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허가조건의 숙지의무) 위 허가조건의 미숙지로 인한 손해는 입찰참가자 및 사용자(낙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을 공단에 전가할 수 없다.

<<수 정>>

[별지 제2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목적)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의 목적은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 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10%)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부산광역시장(공단 이사장)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한 날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7조(보험가입) 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이하 “사용허가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을 수령인으로 하여 공단에서 지정하는 손해보험(화재,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공단)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비용(제세공과금, 관리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부산광역시(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부산광역시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부산광역시(공단)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요청하려면 2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공단 관리인)의 참여하에 당해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공단에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공단에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공단)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부산광역시(공단)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부산광역시(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허가조건의 숙지의무) 위 허가조건의 미숙지로 인한 손해는 입찰참가자 및 사용자(낙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을 공단에 전가할 수 없다.